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변경 사유**

- (1)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투자 예외 조항 추가
- (2)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 (3) 반기(2015. 3. 6. 기준)으로 재무 정보 및 운용실적 갱신

□ **효력발생일** : 2015. 7. 31.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2014.09.30	2015.06.3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환매조건부 매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2) 동일종목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4)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p>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u>15.4%</u>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3. 6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3. 6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u>2015. 3. 6 기준</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u>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u>(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	<u>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u>

		<p>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